

제356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27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계속)
1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계속)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4
 - 간사(김삼화) 인사 4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이우현 · 김진태 · 강석진 · 김명연 · 광대훈 · 함진규 · 이종배 · 김태흠 · 김정재 · 김상훈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4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 · 위성곤 · 안호영 · 홍문표 · 김석기 · 이개호 · 김철민 · 정인화 · 박정 · 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6)(계속) 4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위성곤 · 안상수 · 김순례 · 김학용 · 홍일표 · 정병국 · 김현권 · 김성찬 · 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4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종회 · 김철민 · 오세정 · 이찬열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주승용 · 박준영 의원 발의) 4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박덕흠 · 홍문표 · 김석기 · 주광덕 · 박완수 · 김태흠 · 지상욱 · 윤종필 · 이종명 의원 발의) 4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 · 김영호 · 김종회 · 김철민 · 박남춘 · 박주민 · 박완주 · 박재호 · 설훈 · 안호영 · 어기구 · 위성곤 · 이개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84) 4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김동철 · 권은희 · 김관영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 · 최도자 · 하태경 의원 발의) 4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0.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종회 · 김철민 · 송기석 · 오세정 · 이찬열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4
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상돈 · 이석현 · 문진국 · 장석춘 · 신동근 · 신창현 · 강병원 · 이용득 · 송옥주 · 김삼화 · 서형수 · 한정애 · 박남춘 · 유동수 · 박찬대 · 홍일표 · 안상수 · 송영길 · 윤관석 · 정유섭 · 임이자 의원 발의)(계속) 5
12.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
1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광대훈 · 광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김광립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金成泰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종태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박찬우 · 배덕광 · 백승주 · 서청원 · 성일종 · 송석준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엄용수 · 여상규 · 엄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의동 · 유재중 · 윤상직 · 윤영석 · 윤재욱 · 윤종필 · 윤한홍 · 이군현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현승 · 이현재 · 이혜훈 · 임이자 · 장석춘 · 전희경 · 정갑윤 · 정병국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욱 · 조경태 · 조원진 · 조훈현 · 주광덕 · 지상욱 · 최경환(새)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하태경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8)(계속) …… 5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인재근 · 서형수 · 최명길 · 이정미 · 송옥주 · 신창현 · 어기구 · 강병원 · 강훈식 ·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843)(계속) …… 5
-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서형수 · 김경협 · 유동수 · 장정숙 · 윤후덕 · 최도자 · 진선미 · 이용득 · 윤관석 · 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5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어기구 · 송기현 · 채윤경 · 권미혁 · 금태섭 · 서형수 · 이용득 · 박경미 · 박재호 · 손혜원 · 신창현 · 송옥주 · 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2)(계속) …… 5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조배숙 · 김종희 · 유성엽 · 윤영일 · 오세정 · 장정숙 · 최경환(국) · 박주현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925)(계속) …… 5
-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이석현 · 김종민 · 송기현 · 김현권 · 김상희 · 김경협 · 원혜영 · 박정 · 강병원 · 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7441) …… 5
-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신경민 · 김성수 · 추혜선 · 고용진 · 조승래 · 박주민 · 김해영 · 한정애 · 윤관석 · 유승희 의원 발의) …… 5
-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김경협 · 김병욱 · 김철민 · 전해철 · 김민기 · 설훈 · 박찬대 · 강병원 · 이수혁 · 한정애 · 어기구 · 안민석 · 이재정 · 송기현 · 민병두 · 안규백 · 신경민 · 이훈 · 유승희 · 서형수 · 전현희 · 손혜원 · 박정 · 김경수 · 박영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7985) …… 5
-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전해숙 · 이동섭 · 전현희 · 오제세 · 김해영 · 고용진 · 박정 · 김중로 의원 발의) …… 5
-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노웅래 · 한정애 · 이용득 · 윤소하 · 인재근 · 정성호 · 김상희 · 서형수 · 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12) …… 5
-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강창일 · 권미혁 · 김병욱 · 김정우 · 김철민 · 민홍철 · 박정 · 윤소하 · 인재근 · 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5
- 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신창현 · 김정우 · 이정미 · 윤관석 · 이용득 · 송옥주 · 박찬대 · 유동수 · 노웅래 · 정성호 · 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29) …… 5
-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이훈 · 이찬열 · 최운열 · 최도자 · 이동섭 · 정인화 · 신용현 · 김중로 · 윤영일 의원 발의) …… 6
-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변재일 · 우원식 · 원혜영 · 이인영 · 이학영 · 인재근 · 정성호 · 조정식 · 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계속) …… 6
-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 · 금태섭 · 이훈 · 위성곤 · 기동민 · 오영훈 · 강병원 · 김종대 · 송기현 · 박정 · 채이배 · 김경수 · 권미혁 · 김경진 · 조승래 · 박용진 · 강훈식 · 황희 · 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6
-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장제원 · 윤후덕 · 신동근 · 서형수 · 정유섭 · 김학용 · 민홍철 · 유승민 · 신상진 · 최도자 · 양승조 · 홍철호 · 김승희 · 박덕흠 · 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804)(계속) …… 6
-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조배숙 · 장정숙 · 박선숙 · 김관영 · 최도자 · 황주홍 · 정인화 · 윤영일 · 오세정 · 채이배 · 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150) …… 6
-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병원 · 김병욱 · 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윤관석 · 윤종오 · 이용득 · 이원욱 · 추미애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3)(계속) …… 6
-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신창현 · 이해찬 · 김정우 · 이정미 · 윤관석 · 이용득 · 송옥주 · 박찬대 · 유동수 · 노웅래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2) …… 6
-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 · 황영철 · 김무성 · 정유섭 · 전희경 · 박성중 · 강석호 · 최교일 · 유재중 · 김성원 · 신보라 · 이철규 · 강석진 · 문진국 · 임이자 의원 발의) …… 6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03시25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홍영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해체 및 구성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자로 새로운 교섭단체로 구성된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삼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김삼화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삼화) 인사

○위원장 **홍영표** 간사로 선임되신 김삼화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국민의당의 간사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합당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모시고 한정에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로 일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간사 역할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감사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이우현 · 김진태 · 강석진 · 김명연 · 곽대훈 · 함진규 · 이종배 · 김태흠 · 김정재 · 김상훈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 · 위성곤 · 안호영 · 홍문표 · 김석기 · 이개호 · 김철민 · 정인화 · 박정 · 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6)(계속)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위성곤 · 안상수 · 김순례 · 김학용 · 홍일표 · 정병국 · 김현권 · 김성찬 · 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중회 · 김철민 · 오세정 · 이찬열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주승용 · 박준영 의원 발의)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박덕흠 · 홍문표 · 김석기 · 주광덕 · 박완수 · 김태흠 · 지상욱 · 윤종필 · 이종명 의원 발의)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 · 김영호 · 김중회 · 김철민 · 박남춘 · 박주민 · 박완주 · 박재호 · 설훈 · 안호영 · 어기구 · 위성곤 · 이개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84)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 · 김동철 · 권은희 · 김관영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 · 최도자 · 하태경 의원 발의)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중회 · 김철민 · 송기석 · 오세정 · 이찬열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상돈·이석현·문진국·장석춘·신동근·신창현·강병원·이용득·송옥주·김삼화·서형수·한정애·박남준·유동수·박찬대·홍일표·안상수·송영길·윤관석·정유섭·임이자 의원 발의)(계속)
12. **생리대안전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중·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욱·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현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욱·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8)(계속)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인재근·서형수·최명길·이정미·송옥주·신창현·어기구·강병원·강훈식·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843)(계속)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윤관석·박남준 의원 발의)(계속)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어기구·송기현·제윤경·권미혁·금대섭·서형수·이용득·박경미·박재호·손혜원·신창현·송옥주·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2)(계속)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조배숙·김종희·유성엽·윤영일·오세정·장정숙·최경환(국)·박주현·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925)(계속)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이석현·김종민·송기현·김현권·김상희·김경협·원혜영·박정·강병원·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7441)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수·추혜선·고용진·조승래·박주민·김해영·한정애·윤관석·유승희 의원 발의)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경협·김병욱·김철민·전해철·김민기·설훈·박찬대·강병원·이수혁·한정애·어기구·안민석·이재정·송기현·민병두·안규백·신경민·이훈·유승희·서형수·전현희·손혜원·박정·김경수·박영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7985)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전혜숙·이동섭·전현희·오제세·김해영·고용진·박정·김중로 의원 발의)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노웅래·한정애·이용득·윤소하·인재근·정성호·김상희·서형수·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12)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권미혁·김병욱·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윤소하·인재근·정준숙 의원 발의)(계속)
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신창현·김정우·이정미·윤관석·이용득·송옥주·박찬대·유동수·노웅래·정성호·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29)

-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훈·이찬열·최운열·최도자·이동섭·정인화·신용현·김중로·윤영일 의원 발의)
- 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변재일·우원식·원혜영·이인영·이학영·인재근·정성호·조정식·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계속)
-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금태섭·이훈·위성곤·기동민·오영훈·강병원·김종대·송기현·박정·채이배·김경수·권미혁·김경진·조승래·박용진·강훈식·황희·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장제원·윤후덕·신동근·서형수·정유섭·김학용·민홍철·유승민·신상진·최도자·양승조·홍철호·김승희·박덕흠·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804)(계속)
-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조배숙·장정숙·박선숙·김관영·최도자·황주홍·정인화·윤영일·오세정·채이배·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150)
-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김병욱·남인순·박정·신창현·윤관석·윤종오·이용득·이원욱·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3)(계속)
-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신창현·이해찬·김정우·이정미·윤관석·이용득·송옥주·박찬대·유동수·노웅래·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2)
-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황영철·김무성·정유섭·전희경·박성중·강석호·최교일·유재중·김성원·신보라·이철규·강석진·문진국·임이자 의원 발의)
-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3시27분)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4항까지 총 3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3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 김성찬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적법한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 사육자에 대해서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례의 경우와 동일한 기간 동안 벌칙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사육장의 경우 도살과 도축이 식품위생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각종 법령의 사각지대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허가신청 간소화 및 행정처분 적용 유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첫째, 적법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로 하고 둘째, 축산농가 의견을 청취하여 관계부처 간 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며 셋째, 2단계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1단계 해당 배출시설의 적법화 이행기한 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이 토양오염물질 외에 다이오신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함께 오염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가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장관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한 후 정화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향후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더라도 정화기준이 없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를 토양오염물질로서 정화기준이 정해진 물질을 제외한 것으로 수정하고, 개정안이 현행 토양정화 체계에 대한 특례 성격이며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에게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이 소개한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생리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역학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2018년 현재 조사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이미 2017년 11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동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역시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총 10차례 논의를 거쳐 정부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김성태 의원,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김삼화 의원, 신창현 의원, 이정미 의원, 박홍근 의원, 강병원 의원, 장석춘 의원, 이찬열 의원, 송옥주 의원, 소병훈 의원, 이연주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0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완료하고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1주 근로시간 한도가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임을 명확하게 하되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개정규정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휴일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행 26개인 근로시간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되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하여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5개 업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소위 활동을 해주신 소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보라 위원 법안심사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말씀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고용노동소위원회 법안심사보고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조문에 다 있으니까요.

○신보라 위원 조문에 있어도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저희들이 추가해서 본회의에서 전체 심사보고할 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사항에 다 깔려 있고……

○신보라 위원 그런데 부칙에 적혀 있는데, 제4조가 적혀 있는데 제3조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서에도 명확히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홍영표 예.

○한정애 위원 저희가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합의문을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3쪽의 세 번째를 보시면 저희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합의했고요, 이것을 딱 명시해서 휴일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꼭 휴일이 아니어도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가요? 반드시 이게 휴일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조문을 오히려 너무 한정해서 정리한 것 같은데.

소위원장님이 읽으신 내용 중에서 3쪽의 셋째, 신·구 조문대비표 제53조제3항인데요, 우리가 그냥 합의할 때는……

○서형수 위원 ‘휴일에 한정하여’라는 표현을 삭제……

○한정애 위원 ‘휴일에 한정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삭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노사 합의로 가능하게끔 하고 그것을 꼭 휴일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河泰慶 위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지금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을……

○한정애 위원 예, 그것만.

○임이자 위원 휴일은 아니지.

○서형수 위원 ‘휴일에 한정하여’라는 표현을 들어내면 됩니다.

○한정애 위원 예, 휴일로 한정되어 있어서 ‘휴일에 한정하여’라는 표현을……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제53조제3항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이것을 빼면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제53조제3항에 대해서 ‘휴일에 한정하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보고서도 같이 수정요.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휴일에 한정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홍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 및 고용노동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아주 간단하게……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같은 경우 원래 저는 법안에 명문화를 원했다가 부칙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대한 사항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 20대 국회가 빠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회의를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말은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주 52시간이 전면 정착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확대 적용되도록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도 그 방향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논의를 꼭 진행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특히 신보라 위원님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착되는 시점에, 또 산업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드시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정신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완영·김현권·홍문표·황주홍·김성찬·김현권·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리대안전성조사와 건강영향 조사를 위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13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3항까지 20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9항 및 제3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관련부처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1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양환경보전법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다 이옥신 등과 같이 인체 유해성은 크지만 아직까지 토양오염 정화기준이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양오염에 대하여 별도의 정화 방법과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환 미군기지 등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의 토양오염 사례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다음 달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행기간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대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대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이번 대책에 따라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회에서 제안한 제도개선TF를 조속히 구성해 축

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시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서 그간 지속되어 온 낮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 기업, 국민 모두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 확대 그리고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법안이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와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법안을 심사해 주시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통과시킨 근로시간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한 16년 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입니다. 그만큼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많은 이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야가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치열한 토론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20대 국회에서 국회가 한 법안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위원님들께서 20대 국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 그리고 한정애 간사님, 김삼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새벽 4시 10분 전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많은 공무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 병 원	김 삼 화	문 진 국	서 형 수
신 보 라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장 석 춘	하 태 경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김 은 경		
차 관	안 병 옥		
기 획 조 정 실 장	박 천 규		
물 환 경 정 책 국 장	송 형 근		
상 하 수 도 정 책 관	박 용 규		
고 용 노 동 부 차 관	이 성 기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성찬 · 박덕흠 · 홍문표 · 김석기 · 주광덕 · 박완수 · 김태흠 · 지상욱 · 윤종필 ·

이종명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심재권 · 기동민 · 노웅래 · 김영호 · 권미혁 · 김철민 · 김경협 · 강창일 · 박찬대 · 원혜영 · 고용진 · 신창현 · 전재수 · 이수혁 · 문희상 · 최운열 · 심기준 · 유승희 · 박정 · 송옥주 · 박경미 · 이훈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송옥주 · 황주홍 · 이철희 · 박찬대 · 김종대 · 이인영 · 이용득 · 박정 · 윤관석 · 한정애 · 서형수 · 신창현 · 심재권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장석춘 · 황영철 · 김무성 · 정유섭 · 전희경 · 박성중 · 강석호 · 최교일 · 유재중 · 김성원 · 신보라 · 이철규 · 강석진 · 문진국 · 임이자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삼화 · 이동섭 · 채이배 · 김수민 · 권은희 · 김동철 · 황주홍 · 하태경 · 신용현 · 송기석 · 이용호 · 최도자 · 김중로 · 주승용 · 정병국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부겸 · 박주민 · 최도자 · 조배숙 · 신창현 · 박찬대 · 박주민 · 민홍철 · 안규백 · 심기준 · 윤관석 · 김정우 · 김영호 · 김상희 · 정동영 · 소병훈 의원 발의)

이상 6건 2월 6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송옥주 · 정성호 · 이철희 · 황주홍 · 채이배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박광은 · 김해영 · 권칠승 · 최인호 · 윤호중 · 정재호 · 전현희 · 김두관 · 김영진 · 백혜련 · 변재일 · 신창현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박광은 · 김해영 · 권칠승 · 최인호 ·

윤호중 · 정재호 · 전현희 · 김두관 · 김영진 ·
백혜련 · 변재일 · 신창현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6. 권미혁 · 박범계 · 박찬대 · 신창현 ·
최도자 · 정춘숙 · 김현권 · 인재근 · 김영호 ·
기동민 · 박광온 · 김상희 · 양승조 · 심재권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6. 권미혁 · 박범계 · 박찬대 · 신창현 ·
최도자 · 정춘숙 · 김현권 · 인재근 · 김영호 ·
기동민 · 박광온 · 김상희 · 양승조 · 심재권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권미혁 · 박범계 · 박찬대 · 신창현 ·
최도자 · 정춘숙 · 김현권 · 인재근 · 김영호 ·
기동민 · 박광온 · 김상희 · 심재권 · 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6건 2월 7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한정애 · 김정우 · 박정 · 박찬대 ·
송옥주 · 신창현 · 원혜영 · 유동수 · 윤관석 ·
정성호 · 정춘숙 의원 발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문진국 · 경대수 · 정운천 · 김정재 ·
정갑윤 · 김선동 · 김현아 · 임이자 · 정진석 ·
김석기 · 이철규 · 여상규 · 이용득 · 김진태 ·
장석춘 · 신보라 · 이종명 · 김용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회부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강병원 · 백혜련 · 천정배 · 민병두 ·
박광온 · 신창현 · 박정 · 송옥주 · 이학영 ·
박찬대 · 정춘숙 · 윤관석 · 김민기 의원 발의)

2월 9일 회부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신보라 · 김성원 · 주광덕 · 함진규 ·
이철규 · 정유섭 · 장석춘 · 송희경 · 이양수 ·
김종석 · 박대출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신보라 · 김성원 · 주광덕 · 함진규 ·
이철규 · 정유섭 · 장석춘 · 송희경 · 이양수 ·
김종석 · 박대출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상희 · 강병원 · 강훈식 · 권미혁 ·
기동민 · 김민기 · 김한정 · 노웅래 · 문희상 ·
박경미 · 박정 · 송옥주 · 어기구 · 이훈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한정애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관영 · 이찬열 · 주승용 · 권은희 ·
이동섭 · 최도자 · 윤관석 · 심상정 · 유의동 ·
하태경 · 박주선 · 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2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최도자 · 주승용 · 황주홍 · 남인순 ·
김삼화 · 김승희 · 이동섭 · 이찬열 · 권은희 ·
김광수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정갑윤 · 성일종 · 이채익 · 최연혜 ·
조훈현 · 김석기 · 박맹우 · 이종명 · 송희경 ·
이진복 · 金成泰 의원 발의)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송옥주 · 박정 · 이용득 · 전혜숙 ·
신창현 · 박찬대 · 이정미 · 유동수 · 김병욱 ·
한정애 · 윤관석 · 강병원 · 서형수 · 홍영표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송옥주 · 박정 · 전혜숙 · 신창현 ·
박찬대 · 이정미 · 유동수 · 김병욱 · 김정우 ·
한정애 · 윤관석 · 강병원 · 서형수 · 홍영표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송옥주 · 박정 · 이용득 · 전혜숙 ·
신창현 · 박찬대 · 이정미 · 유동수 · 김병욱 ·
김정우 · 한정애 · 윤관석 · 강병원 · 서형수 ·
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3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유의동·김관영·하태경·오신환·이명수·이동섭·곽대훈·박인숙·성일중·홍철호 의원 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문진국·신상진·김현아·임이자·이종명·정갑윤·김용태·경대수·주광덕·성일중·송희경·김석기·윤한홍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3. 김민기·강병원·조승래·김상희·김경협·이춘석·박찬대·신창현·노웅래·전재수·고용진·윤관석·김영호·김정우·김병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4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송옥주·강병원·고용진·김병욱·김상희·김성수·김영호·김현권·박찬대·서형수·이용득·이원욱·정성호·진선미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송옥주·강병원·고용진·김병욱·김상희·김성수·김영호·김현권·박찬대·서형수·이용득·정성호·진선미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황주홍·장정숙·이찬열·김수민·김종희·김경진·이동섭·윤영일·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김현권·김영호·김종희·김철민·박남춘·박주민·박완주·박재호·설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9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박인숙·정춘숙·정성호·이명수·김세연·정병국·김성원·강석진·김명연·장정숙 의원 발의)

2월 20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김수민·이동섭·김중로·오세정·김광수·황주홍·최경환(평)·이용호·권은희·이찬열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윤한홍·최연혜·이명수·곽대훈·강석진·김종석·정유섭·박성중·이종구·김석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1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임이자·문진국·주광덕·원유철·이현승·윤종필·장석춘·정유섭·김상훈·김한표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1. 박성중·박덕흠·홍문표·이은재·이종구·곽대훈·홍철호·김학용·윤영석·장제원·이진복·정태욱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임이자·송희경·함진규·윤영일·김명연·金成泰·원유철·문진국·윤종필·김상훈·김한표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이언주·김동철·권은희·김관영·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2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2. 신보라·김성원·이철규·주광덕·전희경·권석창·김정재·정유섭·이양수·홍문표 의원 발의)

2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박광운·김해영·권칠승·최인호·

윤호중 · 정재호 · 전현희 · 김두관 · 김영진 ·
백혜련 · 변재일 · 신창현 의원 발의)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수민 · 손금주 · 채이배 · 오세정 ·
김삼화 · 김경진 · 황주홍 · 김한표 · 김중로 ·
이철희 의원 발의)

2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